

정책자료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蔡 旭

1993.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蔡 旭

1993.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GATT 창설이래, 國際社會에서는 GATT規範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국가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수많은 國際貿易紛爭이 있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保護主義 및 地域主義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貿易紛爭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같은 國際貿易紛爭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多者間 國際規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특히 GATT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紛爭解決에 있어서 GATT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은 論爭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 國際社會에서는 대체로 協議나 妥協을 통한 調整的 役割보다는 司法的 役割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GATT 紛爭解決節次는 국가간의 각종 貿易紛爭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현행 절차의 改善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國際貿易紛爭의 시대적 흐름은 世界交易環境 및 GATT位相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GATT를 중심으로 自由貿易精神이 충만했던 19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간 통상마찰이 保護主義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부터는 세계적인 貿易不均衡과 保護主義 및 地域主義 추세와 더불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世界交易環境속에서 開放化와 國際化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先·開途國과의 貿易紛爭 및 그에 따른 GATT 紛爭解決節次의 援用事例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貿易紛爭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이고 紛爭發生時에도 적극적인 GATT 제소를 통한 紛爭解決節次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本 報告書에서는 현행 GATT 紛爭解決節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의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GATT 紛爭解決節次의 改善方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GATT 창설 이래 현재까지의 貿易紛爭의 현황 및 추이와 분쟁발생의 주요분야 및 원인 뿐만 아니라 해결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貿易政策 및 制度의 改善方向과 GATT 紛爭解決節次의 효율적인 利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本 報告書의 意義를 찾고자 했다.

本 研究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蔡旭 博士가 집필했으며,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원고정리과정에서 崔榮秀, 池致商 研究員과 張美善, 李美善 研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신 大韓貿易振興公社 權重憲 代理와 院內세미나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자세한 論評으로 本 報告書의 質을 높여주신 高麗大學校 朴魯馨 教授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아무췌록 本 報告書가 政策當局, 學界, 業界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3年 11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7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7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10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概要	13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13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15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19
III.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25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25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28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34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37
1. 貿易紛爭의 展望	37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39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45
1. 韓·美 쇠고기紛爭	45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美 反덤핑紛爭	51
VI.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57

表 目 次

〈表 I-1〉 GATT의 基本原則에 대한 例外	9
〈表 II-1〉 GATT 紛爭解決 關聯 主要 決定 및 宣言	14
〈表 III-1〉 國際貿易紛爭의 國家別 · 年代別 推移	27
〈表 III-2〉 國際貿易紛爭의 國家別 · 分野別 現況(1948~1992)	30
〈表 III-3〉 國際貿易紛爭의 措置別 · 年代別 現況	31
〈表 III-4〉 紛爭解決 現況 (1948~1992)	35
〈表 VI-1〉 東京라운드 MTN協定 加入 現況(1991.12.31.現在)	60

圖 目 次

〈圖 II-1〉 紛爭解決(GATT 第23條) 메카니즘	18
-------------------------------------	----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GATT, 즉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의 序文(Preamble)에 의하면 GATT는 關稅 및 기타 貿易障壁의 減縮, 國際交易에 있어서의 差別的 待遇의 제거 등을 통하여 全世界의 經濟福祉를 증진시키고 國際貿易을 확대시키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序文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國際貿易 規範으로서의 GATT는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s Treatment) 및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를 통한 貿易障壁의 철폐로 自由貿易을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國家間 商品, 勞動 및 資本 等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各國의 經濟的 效率을 증대시키고 産業개발을 촉진하는 등, 交易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데에 그 기본정신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GATT는 1948年 창설이래, 會員國間의 貿易에 대한 調整 및 監視를 통하여 貿易政策 및 措置 等に 관한 相互通報 및 協議는 물론이고 貿易紛爭發生時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貿易障壁의 緩和 및 貿易自由化 方案에 관한 多者間協議 및 協商을 주도하고, 貿易懸案問題 및 貿易環境의 調查와 研究, 그리고 각종 貿易規範의 定立 等 실로 다양한 機能을 발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GATT가 國際貿易活動과 관련된 모든 分野에서 결코 완벽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의 지속적인 世界貿易環境改善 노력으로 1948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世界貿易量은 年平均 8.2%가 신장했으며¹⁾, 케네디라

1) 케네디라운드를 통하여 일률적 關稅引下가 이루어진 1960年代 末에는 世界貿易이 年平均 12%에 이르는 高水準의 貿易伸張率을 기록했다.

운드와 東京라운드를 통해 전체적으로 30%를 상회하던 先進國의 平均關稅率 水準도 10% 以下로 引下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國際貿易에 있어서의 GATT의 중요성이 실로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즉, GATT는 수차례의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關稅가 國際貿易에서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工產品을 中心으로 充分한 關稅引下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고 非關稅障壁의 緩和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GATT는 會員國間의 合意를 통한 多者間體制規範의 設定을 통하여 많은 國家가 그와 같은 規範을 遵守하도록 하는 正當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와 같은 規範遵守를 통하여 各國의 國內利益集團으로부터 政策者들의 政治的 負擔을 덜어주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GATT는 國際貿易活動을 위한 規範을 設定하고 執行하는 데에 있어서 네가지의 基本原則을 표방하여 왔는 바, 이는 곧 最惠國待遇의 原則, 內國民待遇의 原則, 自由貿易의 原則, 公正貿易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最惠國待遇의 原則은 多者間體制的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原則으로서 國境措置는 물론이고 國內稅金 및 販賣條件에 있어서 모든 外國상품들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內國民待遇의 原則은 租稅의 賦課와 政府의 規制 등에 있어서 國內에 진입한 外國商品을 國內商品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原則을 이룬다. 한편, 自由貿易의 原則이란 數量制限 등의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통해 自由貿易을 달성하기 위한 原則으로서 貿易障壁은 關稅만을 인정하여 價格메카니즘에 의해서만 貿易을 조절하되 關稅引下도 꾸준히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公正貿易의 原則이란 純粹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한 자유로운 競爭機會를 보장하고 이를 저해하는 덤핑이나 補助金 支給 등 競爭歪曲의 행위에 대해서는 反덤핑關稅나 相計關稅 등의 부과를 통한 적절한 응징까지 허락하겠다는 原則을 의미한다²⁾.

그러나, 國際貿易이 절대적으로 그와 같은 GATT의 대원칙하에서만 이루어지

2) 最惠國待遇의 原則은 GATT 第1條, 內國民待遇의 原則은 GATT 第3條, 自由貿易의 原則은 GATT 第2條 및 第11條, 그리고 公正貿易의 原則은 GATT 第6條 및 第16條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음.

는 것은 아니다. GATT는 國家間的 經濟構造 및 環境, 그리고 產業競爭力에 있어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갖가지 非經濟的 理由 等を 고려하여 특정상황에서는 GATT의 基本原則에서 일탈할 수 있도록 다양한 例外條項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表 I-1〉참조).³⁾

〈表 I-1〉 GATT의 基本原則에 대한 例外³⁾

基本原則	例 外 條 項	主 要 關 聯 條 文
最惠國待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惠貿易協定에 의한 例外 · 經濟統合結成에 의한 例外 · 權能附與條項에 의한 例外 	GATT 第37條 GATT 第24條 東京라운드Framework協定 第1部
內國民待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政府調達物資에 대한 例外 · 필름에 대한 例外 	GATT 第27條 GATT 第4條
自由貿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祖父條項에 의한 例外 · 1次產品에 대한 數量制限 및 輸出補助金 支給許容 · 國際收支 防禦 및 開途國의 經濟開發을 이유로 한 輸入制限措置 許容 · 緊急輸入制限措置 	잠정가입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및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 GATT 第11條 및 第16條 GATT 第12條 및 第18條 GATT 第19條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衆道德, 保健·衛生 및 기타 이유에 의한 制限 ·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輸出入制限 · Waiver에 의한 輸出入制限 	GATT 第20條 GATT 第21條 GATT 第25條

註 : GATT 第37條는 最惠國待遇原則의 例外條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先·開途國間 特惠貿易協定の 근거가 되고 있음.

3) 公正貿易 原則에 대한 例外는 없음.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前述한 바와 같이, GATT 體制下에서는 基本原則에 입각하여 國際貿易과 관련한 각종규범이 制定되어 왔으나, 규범자체의 解析 및 履行에 관한 國家間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수많은 國際貿易紛爭이 발생해 왔다. 특히, 國家間 産業競爭力의 차이 및 構造調整의 지연에 따른 有望幼稚産業 및 構造的 脆弱産業의 보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各國은 GATT 규범을 교묘히 회피하여 自國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각종 貿易政策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國際貿易紛爭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다. 國際貿易紛爭의 추이와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章에서 分析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國際貿易紛爭의 해결에 있어서 GATT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GATT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는 貿易行爲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紛爭을 효과적으로 調整하고 解決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GATT 體制는 國際貿易에 있어서 締約國들에게 광범위한 權利와 義務를 부여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權利와 義務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함은 물론이고 GATT 체제하의 規範을 履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國家間의 紛爭을 調整하고 解決하는 것은 GATT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GATT가 그와 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遂行하지 못한다면, 多者間合意에 의한 GATT內의 각종 權利 및 義務에 관한 규정은 물론 GATT의 존재 자체에도 별 의미가 없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GATT 紛爭解決 機能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紛爭解決에 있어서의 GATT의 역할은 모든 締約國의 중대한 관심사였으며, 또한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論爭의 對象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紛爭解決에 있어서의 GATT의 역할에 대하여는 國際적으로 두 가지의 相反된 견해가 존재하여 왔다. 하나는 GATT의 一般協定이 締約國間의 行動規範이며, 따라서 國家間의 權利와 義務의 균형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立場에서 GATT의 司法的 役割을 강조하는 견

해이며, 또 하나는 一般協定이 本質的으로 行動規範이라기 보다는 協定事項들을 相互受容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에 불과하므로 司法的 역할보다는 紛爭이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GATT의 調整役割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前者는 美國을 비롯한 대부분의 開途國 및 非유럽圈 先進國들의 立場인 반면, 後者는 EC와 日本의 立場으로서 兩者의 立場間에는 오랫동안 많은 論爭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견해차이는 各國의 經濟規模 및 經濟的 與件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바, 美國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GATT의 紛爭解決機能이 커다란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美國이 GATT下의 權利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論理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經濟力이 취약한 非유럽圈 先進國과 開途國들은 그들의 權利가 보다 강력한 GATT 體制下에서 효과적으로 保護될 수 있다는 論理에서 GATT 紛爭解決節次의 司法的 役割을 주장해온 반면, EC와 日本은 그들의 構造的 脆弱産業을 保護하기 위해서 엄격한 GATT의 규범을 회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司法的 體制에 의존하기 보다는 妥協에 의한 紛爭解決을 선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紛爭解決에 있어서 GATT의 司法的 役割에 반대하는 國家들의 論理에 의하면, 패널이 부당하게 紛爭을 야기한 國家에 대해서 특정한 勸告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勸告의 履行에 관한 形式과 時期는 紛爭當事國間에 協議의 對象이 될 것이므로 紛爭은 결국 妥協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司法的 方式에 의한 紛爭解決의 노력은 오히려 締約國間의 妥協의 분위기를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GATT의 紛爭解決機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一見 GATT의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나, 한편으로 重大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國家間의 貿易紛爭을 妥協에 의해서 해결하려 할 경우에 經濟力과 協商力이 약한 弱小國의 立場에서는 強大國에 대한 높은 貿易依存度 및 적당한 報復措置의 부재로 말미암아 強大國의 패널勸告 혹은 決定事項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特定締約國이 GATT 規範을 위배하거나 國家間의 讓許의 均衡을 깨뜨리

는 경우에는 그 締約國의 行爲를 制裁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締約國이 GATT의 規範을 遵守하고 讓許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만, 이와 같은 論理를 전개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紛爭解決을 지나치게 경직된 規範과 節次에 의존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判定을 받은 締約國들의 잦은 GATT 體制 이탈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多者間體制의 붕괴까지 초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多者間體制를 지속적으로 維持시키기 위해서는 GATT의 紛爭解決機能에 강력한 節次履行 權限을 부여하는 동시에 各 締約國의 國內經濟問題 및 그로 인한 政治的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전반적인 GATT 規範에 대한 보다 명확한 定義와 基準의 設定을 통하여 모든 締約國의 權利行使와 義務履行이 公正하게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概要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GATT는 締約國間에 발생하는 貿易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基本的인 紛爭解決條項은 GATT 第22條와 第23條라 할 수 있다⁴⁾. GATT 第22條는 비교적 단순한 條項으로서 一般協定の 運用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協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兩者間 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締約國 公동의 협의에 부쳐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ATT 第23條는 GATT上의 會員國의 權利나 利害關係가 無效化 또는 侵害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중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ATT 紛爭解決의 초기 단계에서는 GATT 第22條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紛爭當事國의 兩者間協議 및 多者間協議 等の 협의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보다 公式的인 紛爭解決은 GATT 第23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ATT 第23條 第1項에서도 비록 兩者間 協議節次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同 條項에서는 紛爭解決節次에서 논의될 수 있는 紛爭의 形態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GATT에서의 論議對象이 반드시 GATT에 위배되는 措置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GATT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他締約國이 GATT下에서 누릴 수 있는 利益을 無效化 혹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措置에 대해서도 論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特定措置가 GATT 규범에 위배되었다는 주장하에서는 GATT 규범에의 위배자체가 提訴國에 否定的 影響을 미쳐 사실상 當해國의 利益이 無效化 또는 侵害의 증거가 된다는 전제하에 被訴國이 그에

4) GATT규정에는 紛爭解決과 관련된 절차가 30餘個의 條項에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締約國들로 하여금 GATT와의 協議를 義務化하고 있는 條項만도 22個에 달함. 자세한 관련 條文은 大韓貿易振興公社, 「紛爭解決과 GATT」, 1993, p.21, 註 1)참조.

대한 反駁論理 및 證據를 제시할 의무가 있는 반면, GATT에 위배되지 않는 措置에 대해서는 提訴國이 提訴의 妥當性을 증명해야 할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ATT 第23條 第2項에서는 特定事案이 兩者間協議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締約國團이 調査를 거쳐 勸告 및 決定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提訴國이 讓許나 기타 義務를 停止하는 것을 許容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⁵⁾.

현행 第23條의 紛爭解決規定은 1955年 3月 10日字「GATT前文, 2部, 3部の 改正에 관한 議定書」(1957年 10月 7日 발효)에 의해 일부 改正된 이래, 그 이후에는 條文自體의 추가개정 없이 몇차례에 걸친 決定(Decision) 혹은 宣言(Declaration)을 통해 보완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⁶⁾(〈表 II-1〉참조).

〈表 II-1〉 GATT 紛爭解決 關聯 主要 決定 및 宣言

決定 및 宣言	內 容
1958年 Procedures	多國間協議節次 規定
1966年 Decision	先進 締約國들의 措置를 對象으로 開途締約國이 提訴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節次 規定
1979年 Understanding & Annex	기존 紛爭解決節次規定의 改善 및 個別非關稅협정 관련 紛爭解決節次 規定
1982年 Ministerial Declaration	1979年 Understanding 一部規定 改善
1984年 Ministerial Action	패널節次 및 締約國團의 決定 等に 대한 追加補完 규정
1989年 Improvements	UR中間評價 合意事項 반영

紛爭解決規定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東京라운드에서 ‘通告·協議·紛爭解

5) GATT 초창기에는 그와 같은 調査, 勸告 및 決定 등이 全體 締約國團, 혹은 紛爭當事國이 포함되는 作業團(Working Group)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1950年代 중반부터는 3人 혹은 5인으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慣例가 되어 왔음.

6) 大韓貿易振興公社, 前掲書(1993), pp.52-53 참조.

決 및 監視에 관한 合意(1979年 Understanding)'와 함께 9個 分野의 특수한 紛爭解決節次가 協定(Codes)의 형태로 採擇되었다는 것이다⁷⁾. 이들 協定은 각각의 紛爭解決規定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로 GATT 第23條에 의한 紛爭解決節次를 準用하거나 거의 유사한 節次的 規定을 갖추고 있다. 이들 紛爭解決規定이 기존의 規定과 다른 점은 패널構成에 있어서 절대적 權限이 주어지며, 특정 단계의 時限設定이 보다 엄격하고 자세하게 規定되어 있고, 패널報告書의 채택여부가 該當分野의 會員國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오늘날의 紛爭解決節次는 1979年 東京라운드協商의 타결시 채택된 양해(1979 Understanding)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同 양해는 비록 GATT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紛爭解決節次를 재정리 한 것에 불과하지만, 모든 締約國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節次에 時間制限을 둠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紛爭解決手段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그 후 3회의 修正 혹은 補充이 있었던 바, 1982年の 閣僚宣言(1982 Ministerial Declaration)에서는 대체로 1979年の 양해사항을 재확인한 데에 불과하고, 1984年の 閣僚宣言(1984 Ministerial Action)에서는 패널리스트의 選定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1989년의 몬트리올 中間檢討會議(1989 Improvements)에서 몇가지의 주요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措置에 의한 現행 紛爭解決節次의 內容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7) 技術障壁協定, 反덤핑協定,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 關稅評價協定, 國際酪農協定, 輸入許可節次協定, 民間航空機協定, 政府調達協定, 牛肉協定 等 9個 協定임.

- ① 兩者間協議
- ② 提訴國의 패널設置要請
- ③ 理事會(Council)의 패널설치
- ④ 패널에의 구두 혹은 書面資料 提出 및 그에 대한 패널審査
- ⑤ 理事會에의 패널보고서 提出
- ⑥ 理事會의 패널보고서 採擇

締約國間에 紛爭이 발생하게 되면 紛爭當事國은 우선 GATT 第23條 第1項에 근거하여 關係事案에 대해 協의를 해야 하며, 當該事案이 양자간 協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提訴國은 GATT 理事會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⁸⁾. 물론, 패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1989年 決定事項에서는 一方締約國이 理事會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同 要請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次期 會期에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理事會의 결정이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慣行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패널이 그 會期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⁹⁾. 물론 被訴國도 패널설치의 不當性을 제기하고 提訴國이 패널설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혹은 연기하도록 協議를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현재까지 패널설치요청이 거절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패널설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만이 일부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¹⁰⁾.

패널설치가 결정되면 패널이 構成되어야 하는 바, 紛爭當事國이 패널구성에 관

8) 協議失敗時 紛爭當事國은 關係기구나 機構의 長에게 和解를 위한 仲裁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義務化된 단계는 아님.

9) 여기에서 의미하는 ‘만장일치’란 반드시 표결에 의한 결정방식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總意(Consensus)’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장일치’로 표현함.

10) 大韓貿易振興公社, 前掲書(1993), p.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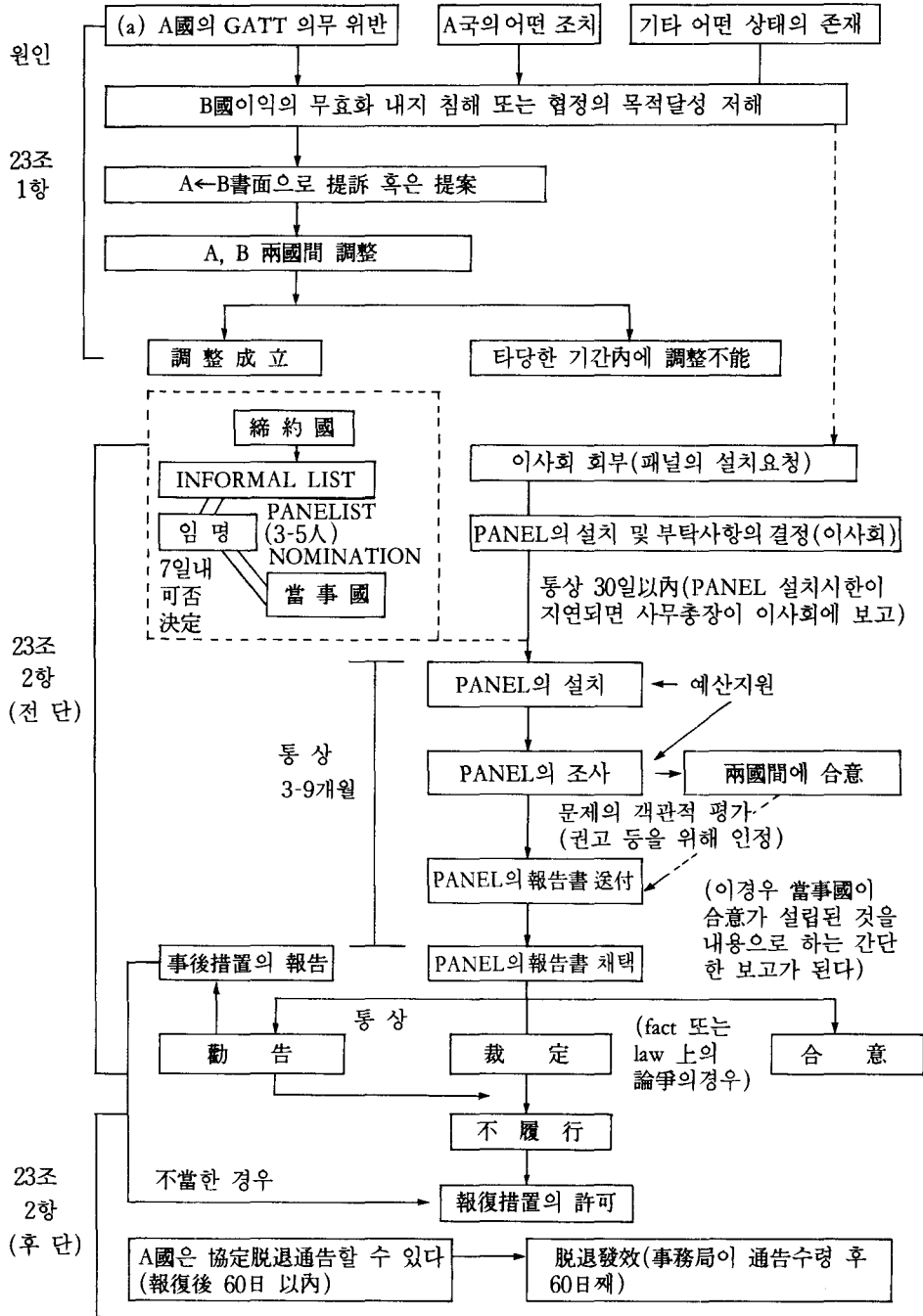
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構成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89年 결정에서는 紛爭當事國이 20日 이내에 패널리스트의 선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GATT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節次上에 규정된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事務總長은 분쟁당사국의 同意下에 패널리스트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널리스트는 3人 혹은 5人으로 構成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 3人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 1989年 이전까지는 패널리스트로서 주로 GATT나 國際通商業務를 담당하는 駐제네바 政府人事가 민간인보다 훨씬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民間人 패널리스트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²⁾.

패널이 構成되면, 패널은 紛爭事案을 調査·檢討하고 締約國團이 GATT 第23條에 규정된 勸告나 決定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評價內容을 포함하는 報告書를 작성해야 하는 바, 그 과정에서 紛爭當事國 혹은 필요에 따라 利害關係가 있는 締約國으로부터 口頭 및 書面陳述을 제출받는다. 紛爭當事國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自國의 의견을 제시하며, 패널은 그와 같은 의견을 檢討한 후 同 報告書를 GATT 理事會에 제출한다. 同 報告書는 勸告 혹은 決定事項을 포함하는 바, 만약 무효화나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치철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加害國에게 被害國에 대한 報償을 하도록 勸告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加害國에 대한 被害國의 報復까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패널은 加害國에게 문제의 措置를 철회하거나 GATT 規範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와 같은 履行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부여한다. 따라서, 報復措置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GATT 第23條에 근거하여 허용할 수 있으나, GATT 역사상 報復措置가 허용된 예는 단 한 건 밖에 없

11) 3人的 패널리스트가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構成上의 均衡確保 및 패널리스트 運用의 편리함 때문이다. Pescatore, P. (1993), p.7 참조.

12) GATT事務局이 패널리스트 選定의 效率性을 위해 일정한 資格要件을 갖춘 패널리스트의 명부를 보유하여 狀況에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選定할 수 있음.

〈圖 II-1〉 紛爭解決(GATT 第23條) 메카니즘



資料 : 産業研究院, 「紛爭解決節次」, 1987, P. 5.

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報復措置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패널報告書는 패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며, 締約國團을 대신하여 GATT 理事會에서 채택된 경우에 그 효력을 갖게 된다. 報告書 채택 여부에 관한 理事會의 決定은 慣行에 따라 滿場一致制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와 같은 紛爭解決節次를 要約하면 <圖 II-1>과 같다.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GATT 紛爭解決節次는 1989年 12月 몬트리올에서 開催된 中間 검토 각료회의 (Mid-term Review Ministerial Meeting)에서 이미 상당부분 強化되고 合理化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最終結果에 따라 훨씬 포괄적인 改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GATT 第22條 및 第23條의 基本性格 및 哲學은 불변하겠지만,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는 紛爭解決 관련 協定案에서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선, 東京라운드 9個 MTN協定에 따른 별도의 特殊紛爭解決節次의 마련으로 사실상 GATT 紛爭解決體制의 一貫성이 크게 損傷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새로운 協定案에서는 모든 紛爭解決條項을 하나의 單一體制로 再統合시키려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서비스와 知的財産權까지 포함하여 GATT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를 包括協定(covered agreements)下的 單一紛爭解決體制로 統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單一紛爭解決體制가 效率적으로 維持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紛爭

13) 1951年 낙농품의 輸入制限에 관한 네델란드-美國間的 紛爭件임.

解決機能을 관장할 수 있는 機構의 設立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우루과이라운드協定案(이하 'UR協定案'이라 칭함)에서 제시된 紛爭解決機構(Dispute Settlement Body)가 그러한 機能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同 協定案에서는 紛爭解決過程에서 패널의 法的 推理上 예외적인 오류를 교정하고, 勸告 또는 判定의 신속한 履行을 확보하기 위한 目的으로 上訴檢討制度(Appallated Review System)의 도입과 함께 同 制度를 運用할 上訴機構(Appallated Body)의 設置를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오늘날 GATT의 추세가 紛爭解決節次의 司法的 役割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推移를 살펴볼 때, 向後 GATT 紛爭解決制度는 紛爭解決機構, 패널, 上訴機構의 3元的 體制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體制下에서는 패널의 設置權으로부터 패널報告書의 採擇을 保障하기 위한 手段 및 履行에 대한 監視(monitoring)에 이르기까지 모든 節次上의 手段이 強化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GATT 紛爭解決節次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패널報告書 채택의 遲延과 패널의 勸告 및 決定事項에 대한 敗訴國의 履行遲延, 그리고 복잡한 事案에 있어서 패널의 誤判可能性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改善對策의 마련이 시급한 國際的 課題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協商過程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懸案中의 하나가 바로 不利한 判定을 받은 強大國에 의한 패널報告書 채택의 방해로 인하여 報告書의 採擇이 沮止 혹은 遲延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UR協定案에서는 패널報告書의 채택기간을 設定하고 敗訴國에 의한 上訴要請이 없거나 혹은 理事會가 滿場一致로 報告書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同 報告書가 自動的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敗訴國을 포함하여 패널決定에 異意가 있는 小數國에 의한 패널報告書의 채택저지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逆滿場一致制(inverted consensus)를 통한 報告書의 自動採擇으로 報告書의 採擇이 훨씬 容易해졌다고 할 수 있다. 上訴檢討制度의 導入은 패널報告書가 敗訴國에

불리하게 강압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敗訴國의 權益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역시 逆滿場一致의 節次에 의한 上訴機構의 決定에 敗訴國이 궁극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패널報告書의 採擇沮止는 사실상 不可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의 決定 및 勸告事項의 履行에 대해서는 UR協定案에서는 구체적인 節次의 마련과 합리적인 時限設定을 통하여 패널의 決定과 勸告의 신속한 履行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와 함께 不履行時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對應手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紛爭解決體制下에서는 敗訴國이 패널의 決定 혹은 勸告事項을 제대로 履行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不履行에 대한 代價支拂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履行에 대한 監視體制의 強化를 통하여 不履行時 혹은 履行遲延時 敗訴國에게 커다란 부담이 지워진다면, 보다 신속한 履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敗訴國이 패널報告書의 決定과 勸告를 즉시 履行하지 않을 경우 GATT가 관련 締約國으로 하여금 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는 강한 權限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GATT次元에서의 응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改革은 敗訴國에게 심한 經濟的 負擔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不履行에 대한 負擔을 勝訴國이 지게되는 현행체제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勝訴國은 敗訴國의 신속한 履行을 통하여, 혹은 報復措置를 통하여 공평한 讓許의 均衡을 確保할 수 있는 權利가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事案에 대한 패널의 誤判可能性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패널自體의 質的向上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패널의 判定에 대해서도 異意를 提起하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GATT內에 上訴檢討制가 도입되면 상당부분 改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패널의 運用에 있어서도 패널리스트의 名簿를 축소하여 小數의 패널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보다 경험이 풍부한 패널리스트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小數의 패널리스트 및 上訴節次

의 運用은 各 締約國의 立場에서도 特定 貿易行爲가 GATT에 不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다 明確한 豫測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GATT에 위배되는 貿易行爲를 事前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利點이 있겠으나, 上訴節次의 運用으로 인한 紛爭解決의 時間的·資源的 浪費에 대한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GATT 紛爭解決節次의 機能을 強化하기 위한 國際的인 노력의 結果로 UR協定案에는 그 동안 國際的 論難이 되어온 많은 問題점이 改善될 수 있는 方案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事項들이 다수 존재해 있다.

첫째, UR協定案에는 紛爭解決節次의 一貫性을 維持하기 위해 모든 紛爭解決條項을 하나의 單一體制로 再統合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의 완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一般紛爭解決節次와 特別協定下의 特殊紛爭解決節次間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다. 反덤핑協定과 民間航空機協定은 자체의 특수한 紛爭解決節次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者는 패널설치후 東京라운드 합의가, 後者는 GATT 第22條 및 第23條나 1979년 양해사항이 준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關稅評價協定, 技術協定,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 政府調達協定 등 4개 協定은 독자적인 委員會를 통한 구체적인 紛爭解決節次를 규정하고 있을 뿐, GATT 第22條 및 23條나 1979년 양해사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상황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一般紛爭解決節次와 特殊紛爭解決節次間의 상충 가능성에 대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차선택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UR協定案에는 紛爭當事國의 國民은 紛爭當事國間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當該紛爭과 관련된 패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그와 같은 규정이 최근에 그 결성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自由貿易地帶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

부가 不分明하다는 것이다. 同 規定의 주석에는 ‘關稅同盟이나 共同市場이 紛爭 當事國일 경우에는, 同 規定이 關稅同盟이나 共同市場의 모든 會員國에 適用됨’으로 정하고 있으나, 自由貿易協定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NAFTA에의 적용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셋째, UR協定案의 內容을 檢討해 볼 때, 신속한 紛爭解決을 위한 각종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間檢討段階(interim review stage)의 도입으로 그 효과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中間檢討段階의 導入은 조사확 인부문의 正確性 與否를 檢討하고 패널調查過程에서 청구한 紛爭當事國들의 의 견을 반영하는 데에 그 본래의 意義가 있다고 하겠으나, 同 段階의 도입으로 인 하여 패널과정에 소요되는 期間이 지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패널의 進行過程에서 紛爭當事國의 영향력행사로 말미암아 패널리스트의 獨立性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ATT規定을 위배하지 않은 措置에 대한 紛爭(Non-violation Disputes)의 경우 그 기준 및 범위가 不明瞭하여, 特定措置의 GATT위배 여부나 상대국 利益의 침해 여부에 대해 紛爭當事國間에 論難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UR協定案에는 그러한 경우에 勸告 또는 상호만족할 만한 調整에 의해서만 紛爭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同 措置가 고의적으로 相對國의 利益을 無效化 또는 侵害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도 커다란 拘束力을 부과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들은 現行 紛爭解決節次 및 UR協定案上에 잠재하고 있는 수 많은 문제점중 一部에 지나지 않으나, 그 重要性을 감안할 때 國際社會가 시 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성공적으로 妥結될 경우에는 GATT의 諸規定과 MTN協定의 적절한 解析과 執行을 확보하기 위한 各種制度가 마련됨으로써 現 規定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紛爭解決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減

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紛爭解決節次와 관련하여서는 同節次의 迅速性 및 效率性を 提高함으로써 紛爭當事國이 締約國團의 決定이나 勸告를 신속히 履行하도록 하는 데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반드시 認識되어야 할 것은 世界紛爭件의 약 90%를 차지함으로써 GATT紛爭解決節次에 의 依存도가 높은 美國·EC·캐나다·日本 등 先進國들이 國際貿易紛爭解決節次의 公正하고 效率적인 改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世界經濟는 지난 1950年代와 1960年代에 이른바 黄金期(Golden Age)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戰後의 經濟復興과 貿易擴大를 목표로 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協定에 따라 1945년에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탄생하고, 1948년에는 GATT가 創設됨으로써 自由貿易의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多者間 協商體制가 원활히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67年 케네디라운드協商의 妥結로 世界의 關稅水準이 대폭 낮아짐으로써 貿易障壁으로서 關稅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도 同期間 各國의 貿易自由化 노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부터는 美國의 經濟的 地位가 점차적으로 劣化되기 시작하고 保護貿易主義가 대두되는 반면, 日本 및 유럽의 경제권이 부상하면서, 美國에 의해 주도되던 世界經濟가 美國·EC·日本 등에 의한 3極化 體制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석유수출국들의 OPEC이 결성되고 域內關稅撤廢 및 對外共通關稅의 확립을 위한 EC의 共同市場 形成이 가속화됨에 따라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性向과 함께 非關稅障壁이 강화되고, 특히 석유과동으로 인하여 先·開途國을 막론하고 國際收支의 방어를 위한 保護貿易主義가 深化되기 시작하였다. 1973-79기간동안 개최된 東京라운드도 이와 같은 保護貿易主義의 深化를 예방하고 非關稅措置에 대한 광범위한 國際規範을 마련함으로써 世界貿易秩序를 새로이 개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世界貿易秩序의 개편을 위한 國際的 努力에도 불구하고 1980年代에 들어서서는 第2次 석유과동과 함께 전세계의 經濟가 심한 침체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한 保護主義 및 地域主義의 深化로 인하여 自由貿易主義를 기본

이념으로 출범한 GATT 體制가 公正貿易 및 管理貿易을 政策基調로 내세우는 先進國들에 의해 크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國家別 貿易不均衡現象의 深化와 保護貿易現象의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國際貿易秩序의 확립을 위해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協商도 各國의 참여한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GATT의 規範力 喪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증폭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世界交易環境 및 GATT位相의 변화는 國際貿易紛爭의 시대적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48年 GATT창설이래 1992년에 이르기까지 GATT體制內에서 논의된 國際貿易紛爭은 總 191件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의 대부분이 先進國間의 紛爭이었으며, GATT體制가 제대로 정착되기 以前인 1950年代 前半 以後부터 1960年代 末에 이르기까지는 紛爭件數가 현저히 감소하다가 1970年代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先進國들의 保護貿易主義의 性向이 심화된 1980年代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表 III-1〉참조). 1990年代에 들어서도 약 2년여에 걸쳐 紛爭件數가 약 20與件에 이르고, 1980年代 以後 지금까지의 紛爭件數가 總 件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GATT體制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國家間의 貿易紛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80年代부터는 東京라운드에서 타결된 9個 非關稅 分野의 協定下에서 발생한 紛爭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50年代 후반부터 1970年代 초반에 걸쳐 紛爭의 件數가 비교적 적었던 것은 GATT의 기본정신인 自由貿易主義 性向이 締約國들간에 팽배해 있었던 것이 주요원인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GATT 紛爭解決節次가 貿易紛爭의 해결에 있어서 司法的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國家間의 協議를 통하여 紛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GATT의 기본성격 및 철학이 GATT內의 締約國들 사이에 우세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GATT 紛爭解決節次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리라는 分析도 가능하다고 하겠다¹⁴⁾. 한편, 191件의 紛爭中에서 先進國間에 발생한 紛爭이 142件으로 전

14) Pescatore, P. and et al, 「Handbook of GATT Dispute Settlement」, 1991, p.70 참조.

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美國·EC·日本·캐나다 등 4個 先進國 이 관련된 분쟁이 164件으로 전체분쟁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國家間의 貿易紛爭 및 紛爭解決節次의 이용이 주로 先進國들에 의해 주도되

〈表 Ⅲ-1〉 國際貿易紛爭의 國家別·年代別 推移 (單位：件數)

國家		年代									
		1948 - 54	1955 - 59	1960 - 64	1965 - 69	1970 - 74	1975 - 79	1980 - 84	1985 - 89	1990 - 92	計
美 國	提訴	4	1	3	1	7	7	11 (6)	24 (7)	7 (4)	65(17)
	被訴	3	1			1		12 (4)	27 (6)	11 (7)	55(17)
E C	提訴					1	1	13 (5)	13 (3)	2 (1)	30 (9)
	被訴			1		2	6	14 (4)	16 (4)	4 (1)	43 (9)
日 本	提訴							1	3 (1)	1 (1)	5 (2)
	被訴						4	4 (2)	10		18 (2)
캐나다	提訴					1	1	5 (1)	9 (1)	4 (2)	20 (4)
	被訴			1			2	3 (1)	7 (3)	3 (2)	16 (6)
濠 洲	提訴		3				1	2	3		9
	被訴	1							2 (2)		3 (2)
其 他 先進國	提訴	11	5				1	2	7 (3)	3 (3)	29 (6)
	被訴	9	7	3	1	6	2	5 (1)	6 (3)	1 (1)	40 (5)
開途國	提訴	3		2		1	3	6 (1)	14 (4)	4 (1)	33 (6)
	被訴	5	1			1		2 (1)	5 (1)	2 (1)	16 (3)
計	提訴	18	9	5	1	10	14	40(13)	73(19)	21(12)	191(44)
	被訴	18	9	5	1	10	14	40(13)	73(19)	21(12)	191(44)

註：1. 1990년 이후 統計는 다수의 이용 가능한 資料를 綜合하여 算定하였으므로 GATT 의 公式統計와 一致하지 않을 수 있음.

2. 괄호안의 숫자는 東京라운드 MTN協定下의 紛爭件數임.

3. EC 個別會員國은 기타 선진국에 포함됨.

資料：1. GATT MTN.GNG/NG13/2/4/Rev.1

2. 大韓貿易振興公社, 前掲書(1993).

3. GATT, GATT Activities, 各年호

4. Pescatore, P. and et al, 前掲書(1991).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開途國이 관련된 件數는 49件에 이르러 그 빈도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 역시 모두 先進國과의 貿易紛爭이었으며 開途國間의 貿易紛爭은 全無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國家別로는 美國이 65件의 提訴에 55件의 被訴로 무역분쟁에 가장 많이 관련되어 왔으며, EC(個別會員國 제외)가 30件의 提訴에 43件의 被訴, 캐나다가 20件의 提訴에 16件의 被訴, 그리고 日本이 5件의 提訴에 18件의 被訴로 이들 4個國이 관련된 貿易紛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특기할 만한 사항은 美國과 캐나다는 提訴事例가 被訴事例보다 많은 반면, EC와 日本은 被訴事例가 훨씬 많다는 것으로, 이는 EC와 日本이 그들의 構造的 脆弱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措置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GATT의 기본목표가 비록 각종 貿易障壁의 철폐를 통한 自由貿易을 구현함으로써 세계 各國의 經濟的 效率을 증대시키고 産業開發을 촉진하는 등 교역으로 인한 利益을 極大化시키는 데에 있다고 하겠으나, 貿易自由化의 과정에서 國家間 産業競爭力의 差異 및 構造調整의 지연에 따른 有望誘致産業 및 構造的 脆弱産業의 保護問題 등으로 일부국가는 커다란 經濟的·政治的 負擔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國家가 自國의 構造的 脆弱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을 실시하여 왔는 바, 그로 인하여 GATT의 원칙과 규범이 자주 무시되거나 혹은 회피되어 왔으며, 이는 곧 貿易紛爭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잦은 紛爭이 발생한 分野는 역시 農産物 分野라고 할 수 있다. 農産物 分野에 있어서는 GATT에서조차도 그의 特性을 감안하여 一般協定

15) 1948~92기간동안 EC個別會員國의 관련건수도 22件에 달함.

및 各種 附屬協定上에 多數의 例外措置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例外措置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各國은 이의 濫用을 일삼아 왔다. 이와 같은 現狀은 GATT가 美國으로 하여금 GATT 第11條에 일치하지 않는 쿼타를 많은 農産物에 적용할 수 있도록 1955년에 GATT 第11條의 履行에 대한 義務免除(Waiver)를 인정함으로써, 餘他國家도 그와 같은 義務免除가 一般的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GATT 역시 農産物에 대한 輸入規制를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許容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EC는 대부분의 農産物에 대해 關稅讓許를 하지 않음으로써 각종 輸入賦課金을 필요에 따라 流動的으로 부과하여 域外價格보다 높은 輸入農産物의 價格設定을 통하여 輸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開途國들도 GATT 第18條의 國際收支 방어나 自國 經濟開發을 이유로 한 例外條項을 이용하여 農産物에 대해 數量制限을 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왔다. <表 Ⅲ-2>를 살펴보면, 전체 紛爭件數 중에서 純粹 農産物과 관련된 件數가 58件이고 農産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加工食品·飼料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總 紛爭件數의 약 40%를 차지함으로써 農産物 關聯 紛爭이 國際貿易紛爭의 주종을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國家別로는 美國이 提訴 24件, 被訴 10件으로 農産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紛爭에 관련이 되었고, EC는 提訴 6件, 被訴 20件, 開途國이 提訴 10件, 被訴 8件, 그리고 日本·濠洲·캐나다 등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이 提訴 6件, 被訴 12件 등으로 美國과 EC가 農産物과 관련하여 주된 紛爭當事國이 되어왔다. 그러나 기타 선진국의 대부분이 EC 個別會員國임을 감안하면, EC가 가장 주된 紛爭當事國임은 물론이고 被訴件數도 餘他國家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볼 때, EC가 農産物分野에 있어서 輸入規制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一般製造業을 비롯한 기타분야에 있어서 貿易紛爭이 相對的으로 적었던 것은 農産物 分野에 비해서는 그들 分野에 있어서의 貿易自由化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고 GATT의 기능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 왔다는 分析도 가능하다고 하겠

다. 製造業중에서도 金屬·鐵鋼, 纖維·皮革 및 신발류 등에 있어서의 貿易紛爭이 비교적 많았다는 점도 先進國들이 그들의 脆弱産業 혹은 斜陽産業에 대해서 保護主義的인 輸入制限措置를 많이 사용한 結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Ⅲ-2〉 國際貿易紛爭의 國家別·分野別 現況(1948~1992)
(單位 : 件數)

國家別	分野	農産物	加工食品	水産物	木材·	金屬·	纖維·	신발류	化學	기 타	其他	計
			· 飼料		製紙	鐵鋼	皮革		纖維	製造業		
美 國	提訴	24(5)	9(2)	2		2	3	1		5 (5)	19(5)	65 (17)
	被訴	10(2)	7(2)	5(2)	2(2)	4(3)	1	2(1)	4	8 (4)	13(2)	55 (17)
E C	提訴	6(2)	7(3)	1		3		1	1	6 (4)	5	30 (9)
	被訴	20(2)	6(1)		1	1	1		0	5 (3)	9(3)	49 (9)
日 本	提訴								0	3 (1)	2(1)	5 (2)
	被訴	4	2	1	1	1	4	1	0	2 (1)	2(1)	18 (2)
캐나다	提訴	4	3	1	4(2)	1(1)	2		1	1	3(1)	20 (4)
	被訴	4(2)	5(2)	1		3			0	1 (1)	1	16 (6)
濠 洲	提訴	8	1									9
	被訴		1(1)						1	1 (1)		3 (2)
其他 先進國	提訴	6		3(2)		2(2)	3			7 (2)	8	29 (6)
	被訴	12	1	1			3	1		7 (3)	15(2)	40 (5)
開途國	提訴	10(1)	2(1)	1		1	1	2(1)	3	4 (2)	9(1)	33 (2)
	被訴	8(2)								2 (1)	6	16 (3)
計	提訴	58(8)	22(6)	8(2)	4(2)	9(3)	9	4(1)	5	26(14)	46(8)	191(44)
	被訴	58(8)	22(6)	8(2)	4(2)	9(3)	9	4(1)	5	26(14)	46(8)	191(44)

註 : 1. 괄호안의 숫자는 東京라운드 MTN協定下의 분쟁건수임.

2. EC 個別會員國은 기타 선진국에 포함됨.

3. '기타'는 該當分野가 不分明하거나 하나의 紛爭에 대해 多數(2개 이상)의 品目이 관련된 事案임.

資料 : 〈表 Ⅲ-1〉과 同一.

한편, 國際貿易紛爭의 原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紛爭을 야기시킨 措置의 內容 및 그 推移를 分析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바, 〈表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貿易障壁으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關稅보다는

數量制限을 포함한 각종 非關稅障壁으로부터 발생하는 貿易紛爭이 主種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關稅는 GATT에 의한 수차례의 관세인하교섭으로 인하여 工產品을 중심으로 그 水準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따라서 國際貿易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輸入規制手段으로서의 機能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GATT 主導下에 이루어진 關稅協商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先進國이 開途國의 주요 輸出品目인 農産物을 關稅引下 例外品目으로 분류하여 引下幅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섬유·신발 등의 品目에

(表 III-3) 國際貿易紛爭의 措置別·年代別 現況 (單位：件數)

年代 措置	1948 - 54	1955 - 59	1960 - 64	1965 - 69	1970 - 74	1975 - 79	1980 - 84	1985 - 89	1990 - 92	計
關稅	3	2	3		1	1	3	5		18
數量制限	4		1		3	6	8	25	2	49
差別的 稅金	7	1			5		1	4	1	19
補助金· 相計關稅	1	3				3	11(8)	10(7)	6(4)	34(19)
反덤핑	1						2(1)	6(5)	6(6)	15(12)
기타 NTB	2	3		1		4	9(4)	20(7)	3(1)	42(12)
其他			1		1		6	3	3(1)	14(1)
計	18	9	5	1	10	14	40(13)	73(19)	21(12)	191(44)

- 註：1. 괄호안의 숫자는 東京라운드 MTN協定下의 분쟁건수임.
 2. '數量制限'은 일반적인 수입제한 뿐만 아니라 VER 및 OMA를 포함함.
 3. '기타 NTB'에는 數量制限, 差別的 稅金, 補助金·相計關稅, 反덤핑 등을 제외한 기타 모든 非關稅障壁이 포함됨.
 4. '기타'는 措置內容이 불분명하거나, 하나의 紛爭에 대해 多數(2개이상)의 措置가 동시에 관련된 事案임.

資料：〈表 III-3〉과 同一

대해 高關稅를 부과함은 물론 加工度가 높아질수록 適用關稅率을 引上하는 加工度別 差別的 稅率을 적용함으로써 先·開途國間에 종종 紛爭의 原因을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進行중인 우루과이라운드의 關稅協商에서도 그 동안 關稅讓許가 부진했던 開途國의 關稅引下와 先進國의 高關稅·加工度別 差別的 稅率適用의 완화 등이 主要懸案으로 論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¹⁶⁾.

關稅가 GATT下의 諸般協定에 의해 지속적으로 引下되고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貿易障壁의 主要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弱化됨에 따라, 國際貿易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問題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數量制限을 포함한 각종 非關稅障壁이라고 할 수 있다. 數量制限은 GATT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이 엄격하게 制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農産物에 대한 例外, 義務免除條項에 의한 例外, 開途國의 國際收支防禦를 위한 例外 등 GATT 스스로가 제공하는 各種 例外認定 뿐만 아니라, GATT 規範을 교묘히 回避한 輸出自律規制(VER)나 市場秩序維持協定(OMA) 등의 灰色地帶措置의 使用 등으로 數量制限이 國際貿易에 있어서 가장 주된 紛爭의 要因이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980年代에 들어서는 先進國의 産業構造調整이 지연되면서 輸出自律規制나 市場秩序維持協定 등을 통한 數量制限을 自國産業의 保護手段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灰色地帶措置에 의한 數量制限도 國際貿易紛爭의 要因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國際貿易에 있어서는 數量制限 외에도 自由貿易의 정신을 저해하는 많은 貿易障壁이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가장 國際的 關心을 모으고 있는 分野가 各國의 補助金支給 및 反덤핑制度라고 할 수 있다. GATT에서는 關稅引下效果를 절감시키고 國際貿易에 있어서 比較優位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補助金の支給을 禁止 혹은 嚴格하게 制限하고 있다. 즉 GATT 第16條 第3項 및 4項 그

16) 大韓貿易振興公社, 「우루과이라운드: 그 現況과 對策」, 1990, p.41 참조.

리고 補助金協定の 第9條 및 10條에서는 一次産品 이외의 物品에 대한 輸出補助金의 支給을 禁止하고, 一次産品の 경우에도 補助金을 支給하는 國家가 該當物品의 世界 總輸出量에서 ‘公正한 占有率(equitable share)’ 이상을 輸出하지 못하도록 制限하고 있으나, ‘公正한 占有率’에 대한 基準이 불명료하여 事實상 効果적인 통제를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최근 各種 補助金 紛爭에서 패널이 ‘公正한 占有率’이라는 用語가 特定物品에 적용되기에는 그 基準이 매우 모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계기로, 美國 및 EC 등에 의한 輸出補助金이 증가해 왔는 바, 이는 아르헨티나·濠洲·캐나다 등 補助金 競爭에 참여할 의사나 여력이 없는 국가들에게는 커다란 불만의 요소가 되어 왔다. 또한, 特定 國內補助金이 상계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國家間의 完전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美國이 相計關稅措置를 지나치게 자주 발동함으로써 貿易相對國과의 紛爭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事項이다. 이와 같은 補助金 支給에 의한 貿易紛爭은 1980年代에 들어서부터 그 件數가 급증했는 바, 이는 東京라운드에서 合意된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에 의한 紛爭件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反덤핑制度를 不公正貿易에 대한 應징수단으로서 보다는 自國의 斜陽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輸入規制措置로 활용함으로써, 餘他 先進國 혹은 開途國과의 紛爭이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 바, 이 역시 거의 대부분이 東京라운드 反덤핑協定에 의거한 紛爭이었다.

이 외에도 內國民待遇原則에 위배되는 差別的 稅金의 賦課에 의한 紛爭이 19件에 이르고, 특히 1980年代에 들어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內國民待遇나 最惠國待遇 原則 등에 위배되는 政府調達, 標準制度, 品質檢査 등 기타의 各種 非關稅障壁에 의한 紛爭이 總 42件에 이르러, 최근의 貿易紛爭이 전반적으로 GATT에 의한 統制가 어렵고 措置履行에 있어서도 措置國의 행정적 재량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非關稅措置의 濫用으로부터 비롯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前述한 바와 같이, GATT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는 貿易行爲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紛爭을 효과적으로 調整하고 解決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만약 GATT의 紛爭解決節次가 모든 締約國에게 만족스럽고 公正한 規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規範의 解析 및 適用을 위한 효과적인 節次的 體制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多者間貿易體制의 존속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現行 GATT 紛爭解決制度는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多者間貿易體制를 유지시켜 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GATT창설 이래 지금까지 總 191件的 紛爭中에서 패널이 구성된 事案은 總 118件으로서 그 중 81件에 대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는 바, 17件에 대해서는 패널구성 이후 紛爭當事國의 合意, 提訴撤回, 提訴棄却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11件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패널심사가 진행중이고, 패널이 결정 혹은 권고를 내렸으나 理事會에서 報告書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件에 불과하다(〈表 III-4〉 참조). 個別的 事案의 重要度を 감안할 때 물론 9件이 적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패널이 설치된 紛爭의 약 90%에 이르는 事案에 있어서 패널의 決定 및 勸告가 理事會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많은 國家가 多者間體制의 維持 및 그 規範의 遵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패널報告書의 채택여부보다는 패널의 決定 및 勸告의 履行與否라고 할 수 있다. 패널의 決定이나 勸告가 履行되기 까지는 흔히 7~8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많은 國家에게 現행 GATT 紛爭解決機能의 한계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패널의 決定 및 勸告에 대한 履行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敗訴國이 패널의 決定이나 勸告事項을 檢討하는 데에 대해서는 當事國間의 協議가 필요한 바, 그 과정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에 이르는 長期間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東京라운드協商 이후, 즉 1980年代에 들어서 效果的인

紛爭解決을 위한 갖가지 改革이 단행되고 패널措置에 대해 時限的 制限이 가해짐으로써, GATT의 전반적인 紛爭解決機能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패널措置에 대한 履行을 보장하기 위한 각국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GATT의 紛爭解決機能을 강화하고 패널의 결정이나 勸告事項의 履行保障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패널審査 혹은 決定의 質的 向上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패널의 運用事例를 살펴보면, 경험부족의 패널리스트가 패널의 진행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관리를 패널리스트로서 편중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는 바, 이는 패널의 진행이나 결정의 質的 弱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敗訴國의 不滿 혹은 不服으로까지 연결됨으로써, GATT의 紛爭解決機能을 전반적으로 弱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GATT 紛爭解決制度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패널審査의 효율적인 진행 및 패널의 결정에 대한 質的 向上을 위해서는 경험이 축적된 독립적인 非政府人士를 패널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表 Ⅲ-4〉 紛爭解決 現況 (1948~1992) (單位 : 件數)

패널이 구성된 事案						패널이 구성 안된 事案							
보고서 채택	보고서 미채택	합의	제소 철회	제소 기각	추진중	소계	알선· 조정· 중개	협의· 합의	제소 철회	제소 기각	추진중	기타	소계
81	9	7	8	2	11	118	12	21	21	1	1	17	73

註 : 1. '提訴撤回'에는 提訴者가 提訴를 취하하거나, 當該事案이 理事會에서 더 이상 論議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2. '其他'에는 紛爭의 결과가 不分明하거나, 패널에 의하지 않고 理事會 혹은 締約國團에 의해 直接的으로 해결된 事案이 포함됨.

資料 : 〈表 Ⅲ-1〉과 同一

한편, 패널構成이 안된 경우는 대부분 斡旋·調整·仲介나, 協議 및 合意를 통해서 紛爭이 해결되거나 또는 提訴者가 提訴를 철회함으로써 패널構成이 필요없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패널에 의하지 않고 紛爭當事國의 원만한 合意에 의해

紛爭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肯定的으로 評價될 수도 있겠으나, 合意나 提訴撤回가 強大國의 直接的 혹은 默視的 壓力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對應策 마련이 GATT 紛爭解決制度가 갖추어야 할 重大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1. 貿易紛爭의 展望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際貿易紛爭은 지금까지 주로 農産物을 비롯한 一次産業 分野를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외에는 製造業 分野 關聯 紛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또한 紛爭이 모두 先進國間 혹은 先·開途國間의 분쟁이었으며, 紛爭의 근거가 된 措置에 있어서도 數量制限 및 기타의 非關稅措置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貿易環境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紛爭의 추이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전망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産物 關聯 紛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을 통하여 많은 국제적 懸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면도 있으나, 많은 國家가 農産物市場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自國市場의 급속한 개방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GATT의 規範을 자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 農産物協商에서는 輸出 및 國內補助金의 감축방법과 非關稅措置를 포함한 國境措置의 關稅化方案이 가장 중요한 懸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農産物 交易 規制의 대부분이 각국의 國內政策目標 추구상 불가피하다는 輸入國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타결되어 구체적인 協定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의 실행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마찰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關稅나 數量制限에 의한 紛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其他 非關稅措置에 의한 분쟁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성공적으

로 타결될 경우에는 數量制限에 의한 수입규제는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同協商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數量制限과 같은 직접적인 國境措置는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에, 그 규정이나 기준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고 조사절차 및 발동에 있어서 수입국의 행정적 재량의 여지가 큰 補助金·相計關稅 및 反덤핑에 의한 紛爭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反덤핑措置는 그 동안 美·EC·濠洲·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남용되어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들어 멕시코, 대만, 한국 등 先發 開途國들에 의한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동안 反덤핑措置를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反덤핑規定 자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東南亞國家들까지 이를 활성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反덤핑措置에 의한 분쟁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技術規程·標準·適合判定節次 등과 같은 標準化制度 역시 분쟁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는 각국이 상이한 산업화 과정 및 발전속도 등으로 인하여 자국의 國內市場만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여 독립적인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계적인 貿易自由化 추세에 따라 외국의 標準規格에 맞도록 商品의 변형작업을 하거나 또는 外國의 標準에 맞는 새로운 生産設備을 구비해야 하므로 각국이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단순한 國內産業의 保護를 위해서 標準化制度를 이용한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貿易紛爭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셋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紛爭이 先進國間의 분쟁이었던 데에 반해, 開途國들만의 분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앞으로는 開途國 關聯 분쟁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開途國들의 경우 그 동안 높은 關稅나 非關稅障壁의 존재가 GATT 및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그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무역규모의 확대 등으로 과거와 같은 특혜를 누리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더우기 앞으로는 開途國의 경제가 성장·확대되고 貿易自由化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

상품의 수출확대로 인한 그들간의 분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貿易紛爭이 주로 農産物이나 一般製造業 關聯 物品에 국한되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知的財産權 및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紛爭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 동안 이들 분야에 있어서의 분쟁이 거의 없었던 것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國際貿易에 있어서 그들 분야의 중요성이 국가간에 커다란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그들 분야의 貿易聯關性이 날로 증대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 先進國에서는 이를 상대국가의 전반적인 市場開放이나 自國의 輸入規制手段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소위 신분야가 貿易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최근 각국의 고조된 관심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와 관련된 紛爭展望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가. 서비스 分野

서비스交易의 自由化問題는 1979년 東京라운드協商이 끝난 이후 세계경제에서 서비스産業과 서비스交易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서비스交易을 다룰 多者間規範의 부재로 인하여 국제분쟁의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美國의 주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美國과 日本, 그리고 몇몇 OECD 회원국가 중심의 先進國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서 서비스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비스交易에 관한 多者間規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開發途國들은 국가정책목표와 경제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GATT의 능력한계를 들어 서비스交易이 GATT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異見들은 결국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출범시 開途國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절충됨으로써 多者間서비스協商이 정식으로 개시되었으나,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정의 및 포괄범위에서부터 서비스交易에 관련된 조치 및 영업행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交易의 自由化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대상의 정립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은 1988년 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 이후부터 서비스交易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에 들어서는 분야별 부속서 및 초기자유화 약속을 위한 讓許協商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¹⁷⁾. 同協商이 1991년 이후부터는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서비스 분야 자체가 워낙이 광범위하고 개념자체가 불분명하여,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협상타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서비스 분야에서의 다발적인 國際貿易紛爭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하겠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市場接近, 內國民待遇, 最惠國待遇 등의 원칙과 開途國의 개발개념(development concept) 등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입장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와 같은 원칙이나 개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국가간의 이해상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第V部에서는 서비스 關聯 制度的 規定(institutional provisions)을 두고 있는 바, 특히 第22條의 協議(consultation) 및 第23條의 紛爭解決 및 施行(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등의 조항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관련 분쟁해결에 적용될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서비스一般協定 第22條에서는 각 締約國으로 하여금 서비스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대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호의적인(sym pathetic) 고려를 하는 동시에 적절한 협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와 같

17)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 대상분야로는 金融, 通信, 航空, 勞動力 移動 등이 포함됨.

18) 第V部の 第24조(締約國의 共同行爲), 第25조(理事會), 第27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등도 간접적으로 서비스관련 분쟁해결에 관련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은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結論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국가가 요청할 경우 締約國團이 해당국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第23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紛爭解決手段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각 締約國은 다른 締約國이 서비스협정상 의 의무와 약속이행을 위반했을 경우 書面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되, 적절한 시간내에 해당국가들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 締約國團에 통고되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締約國團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국이 다른 締約國에게 적용하는 의무와 약속을 加害國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協定을 위배하지 않는 조치의 시행이라 할지라도, 同措置로 인하여 讓許約束에서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무효화될 경우에도 第22條 및 23條를 통해 그 시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 분야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 第22條 및 23條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기준들이 정립될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環境 分野

최근 들어 環境問題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國境을 초월하는 大氣 및 水質汚染, 公海上의 資源에 대한 남용, 위험물질의 國境間 移動 및 世界的 共有物의 保護 등과 관련된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만 해도 環境問題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GATT 第23條에 근거한 提訴가 공식적인 패널보고서의 채택에까지 이어진 건이 5건이며, 비록 공식적인 紛爭解決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環境保護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로 GATT에 提訴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環境 分野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비추어볼 때, 향후 環境 關聯 貿易紛

爭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¹⁹⁾. 이와 같이 環境問題가 국제적 이슈로 그 중요성이 급부상되는 이유로는 환경비용의 市場價格으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고, 더욱이 국제적으로 훌륭히 정비된 강력한 環境保護法이 정립되지 않아 국제적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수백개에 이르는 多者間 및 兩者間國際協定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環境 關聯 協定이 상이한 賦存資源을 보유하는 수많은 국가들에 의해 체결된다는 점에서 각국의 價値判斷 및 政策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하여 環境問題에 관한 합의방식, 시한설정 및 효과적인 집행수단 등 강력한 환경관련 규정의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一般協定 및 各種協定을 통하여 모든 締約國에게 공통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합의방식 및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세부적인 國際紛爭解決節次를 갖추고 있는 GATT가 환경 관련 國際貿易紛爭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될 것으로 보인다. 前述한 바와 같이, GATT의 紛爭解決節次는 다수의 환경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공헌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국제환경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關聯規範에 기술적 내용을 보완하고 環境保護를 위한 각국의 政府 및 民間團體들의 의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경우,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GATT 紛爭解決節次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 참치 및 참치제품의 수입규제 관련 캐나다-美國間의 分爭(1982), 石油 및 乳製品 수입에 대한 수입세부과 관련 캐나다·EC·멕시코-美國間의 分爭(1987), 未加工 연어 및 청어의 수출규제 관련 美國-캐나다간의 分爭(1988), 담배 수입제한 및 국내세 부과 관련 美國-태국간의 分爭(1990), 참치 수입규제 관련 멕시코-美國간의 分爭(1991) 등이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은 대표적인 環境 關聯 分爭임. 괄호안의 숫자는 패널보고서의 채택 연도임.

다. 知的財産權 分野

知的財産權 保護의 問題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知的財産權이 서비스와 함께 절대적 비교우위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이 同問題를 자국의 貿易收支 및 國際競爭力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역상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同問題는 비록 기존의 UN專門機構인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각종 協約에 의해 이미 保護·施行되고는 있었으나²⁰⁾, 그와 같은 기존의 關聯 國際協約들에 의한 보호가 미흡하자, 수차례의 국제적 논의를 거쳐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문을 통해 협상의 정식의제로 채택되면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현재까지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知的財産權의 主保有國인 美國, 日本, EC 등의 先進國이 GATT내에 새로운 규범의 마련을 통해 강력한 보호기준의 정립으로 조속히 국제적 보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온 반면, 同分野에서 절대적 열위에 놓여있는 開發國들은 GATT내에 일반적인 원칙만 설정하고 偽造商品의 交易防止와 같은 최소한의 保護와 가능한한 장기간의 유예기간후의 시행을 추구함으로써, 同分野에 대한 協商에 있어서 先·開發國間에 커다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知的財産權 保護에 관한 협상범위가 당초의 偽造商品交易 問題로부터 貿易 關聯 知的財産權, 知的財産權 一般, 新知的財産權의 포함 등으로 그 폭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바, 향후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그 형태에 관계없이 知的財産權 관련 국가간의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앞으로는 經濟材로서의 技術·知識·情報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知的財産權의 貿易關聯性이 현재에 비해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製造業 分野에서 이미 競爭力을 상실해 가고 있는 美國 등 先

20) 파리協約, 베른協約, 로마協約, 特許協力協約, 著作權協約, 제너바協約 등.

進國들이 창작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하에 知的財産權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이나 공공이익에 역점을 두고 미미한 보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開途國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世界經濟構造의 高度化와 함께 技術紛爭이 世界貿易에서 通商摩擦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기존의 世界知的財産權機構(WIPO) 및 각종 협약들에 의한 知的財産權의 保護體制는 대체로 屬地主義를 원칙으로 하여 知的財産權의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함으로써 知的財産權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紛爭解決 및 施行에 관한 규정이 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知的財産權 관련 UR協定案 제60조에서는 각국이 紛爭豫防을 위해 自國의 關聯法, 規定, 決定 등에 대한 명료성을 보장하고 각종 법규 및 결정 등을 공개·발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는 紛爭解決에 있어서 우루과이라운드協定 전체의 통일된 紛爭解決節次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타결될 경우 知的財産權과 관련한 紛爭에 있어서도 GATT 紛爭解決節次가 활용될 전망이다.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이전까지는 국제적으로 經濟發展段階나 國際收支의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어 높은 關稅나 非關稅障壁에도 불구하고 GATT體制內에서의 貿易紛爭을 단 한 건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급속히 팽창하고, 1986~1988 기간동안 貿易黑字를 기록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先進國들의 市場開放壓力이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貿易紛爭이 잦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7년 GATT에 加入한 이래, GATT體制內에서만 총 4건의 貿易紛爭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모두 先進國의 提訴에 의한 紛爭이었으며,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중 1988년에 발생한 韓·美, 韓·濠, 韓·뉴질랜드間 쇠고기紛爭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패널이 설치됨으로써 개별적인 紛爭件數로 기록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事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韓·美 쇠고기紛爭과 1991년 발생한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美 反덤핑紛爭事例에 대해서만 紛爭發生經緯, 主要爭點事項, 패널의 勸告 및 決定事項 등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韓·美 쇠고기紛爭

가. 紛爭發生經緯

韓國은 1967년 GATT에 加入하면서 쇠고기 등 60개 품목을 讓許하였으나, 國際收支委員會(Balance of Payments Committee)로부터 GATT 第18條 B項에 의한 輸入制限措置를 허용받아 쇠고기에 대해 이를 적용해 왔다. 韓國은 1979년 東京

라운드協商時 美國의 요청에 따라 GATT 第2條의 關稅讓許에 의거 모든 輸入 쇠고기에 대해 20%의 關稅를 부과하여 왔으나, 쇠고기의 輸入急增으로 國內 肉값 파동이 일어나자 1984년 10월 이를 철회하고 觀光호텔用을 제외한 쇠고기輸入을 전면 중단하였다²¹⁾.

이에 대해 美國은 韓國의 쇠고기 輸入制限措置가 美國 通商利益을 침해하는 不公正貿易行爲로 간주하고 美通商法 第301條에 근거한 美國肉類協會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이 문제를 GATT에 提訴했다. 이에 따라 1988년 2~3월에는 韓·美間에 GATT 第23條 第1項에 의한 協議가 진행되었으나, 相互 만족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美國은 즉각적인 패널설치를 요구하였다. 韓國은 다른 利害關係國과 즉시 協議를 개시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며 패널설치가 時機尙早라고 주장하고 美國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兩者間 協議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계속해서 패널설치를 요구하였고 濠洲와 뉴질랜드가 이에 동조하자 1988년 5월 韓·美, 韓·濠洲間, 그리고 동년 9월 韓·뉴질랜드間 紛爭解決을 위한 패널이 각각 설치되었다.

나. 主要爭點事項

韓·美 쇠고기紛爭에서 나타난 주요쟁점사항은 ① 패널의 管轄權 問題 ② 쇠고기 輸入中斷措置의 合法性 與否 ③ 畜產物流通事業團(LPMO) 운용의 GATT 위배 여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韓國은 쇠고기 輸入制限措置가 自國의 國際收支 방어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므로 이에 관한 紛爭은 GATT 第23條에 의한 一般紛爭 解決節次가 아닌 GATT 第18條 第12項에 의한 特別紛爭解決節次에 따라야 한다

21) 觀光호텔用은 1985년 5월 中斷함.

고 주장하였다. 즉, 韓國은 GATT 第18條(B)의 第12項(b)(d)에 特別檢討節次가 있으며, 특히 第12項(b)에 대한 國際收支委員會의 검토결과가 締約國團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國際收支防禦措置와 관련된 同件은 GATT 第18條 第12項에 의한 特別節次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韓國은 GATT 理事會가 패널에게 韓國의 쇠고기 輸入規制와 관련해서 國際通貨基金(IMF)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은 韓國의 쇠고기 輸入禁止措置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²²⁾, 만약 이를 GATT 第23條에 의한 절차에서 다룰 경우 GATT 第18條(B)에 의해 輸入制限이 허용되어온 다른 품목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輸入制限措置에 국한된 패널의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패널이 아닌 國際收支委員會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美國은 패널작업 기준에서 同件은 GATT 規定에 근거하여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收支防禦 措置도 GATT의 一般紛爭解決節次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國際收支委員會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어 國際收支狀況에 따른 輸入制限 政策과 制限措置의 전반적인 사항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GATT 第18條 第12項(d)의 紛爭節次는 그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개별품목을 검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美國은 締約國團의 權利를 일부 會員國만이 참여하는 國際收支委員會가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韓國에는 더이상 國際收支의 赤字問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GATT 第18條에 의한 절차보다는 第23條에 의한 절차가 同件을 검토하는 데에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쟁점인 쇠고기 輸入中斷措置의 合法性 與否에 대해, 韓國은 同措置가 GATT 第11條에 위배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第18條에 의해 허용되는 正當한 措置라고 주장한 반면, 美國은 韓國의 쇠고기 輸入制限措置가 GATT 第11條에 명백히 위배되며, 國際收支 때문에 輸入規制를 실시하기 보다는 國內産業保護 때

22) IMF는 각국의 國際收支狀況에 대한 資料를 GATT에 제공하며, 이는 GATT의 판정에 결정적 근거가 됨.

문에 취한 조치인만큼 GATT 第18條(B)에 의해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畜産物流通事業團(LPMO) 운용의 GATT 위배여부에 대해서도 양국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는 바, 韓國이 畜産物流通事業團은 生産者와 消費者로 구성된 純粹民間團體로서 쇠고기의 輸入問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美國은 同團體가 쿼타를 경매함으로써 수입과징금 부과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만큼 讓許效果 保存義務를 규정한 GATT 第2條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數量制限效果도 갖으므로 同團體의 존재 자체가 GATT 第11條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다.

다. 패널의 決定

패널은 GATT 第18條와 第23條 中 同件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國際收支를 이유로한 輸入制限措置에 대해서 GATT 第23條에 의한 提訴可能性을 배제한다면, 이는 一般協定の 적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그러한 입장은 GATT 第18條(B)下的 特別檢討節次에의 의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GATT 第23條가 GATT 第18條(B)를 포함한 一般協定上的 모든 相關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紛爭解決節次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第23條下的 절차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當該措置의 GATT 違背 與否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 패널은 1984년 및 1985년에 취한 韓國의 쇠고기 輸入制限措置는 國際收支防禦를 이유로 한 조치라기 보다는 國內畜産物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주요 이유로서, 韓國이 1984년 및 1985년의 當該措置뿐만 아니라 1988년 8월 이후부터 유지되어온 수정된 輸入制限措置에 대해서도 國際收支委員會에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패널은 韓國이 스스로 當該措置가 GATT 第11條 第1項에 위배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同條 第2項에 근거하여서도 同措置에 대

한 正當性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그와 같은 措置는 당연히 GATT 第11條에 위배된다는 結論을 내린 것이다²³⁾.

또한, 패널은 生産者 위주의 輸入獨占團體로서 輸入을 제한하는 韓國의 畜産物流通事業團의 運用이 GATT 第11條 第1項 및 第17條에 위배된다는 美國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同團體의 존재 자체가 결국 추가적인 貿易障壁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韓國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²⁴⁾. 따라서, 패널은 同團體의 존재가 一般協定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同團體의 行爲 및 그와 같은 行爲가 貿易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단체는 GATT 第17條 및 第11條 第1項 등을 포함한 一般協定상의 많은 관련규정에 일치되도록 運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 패널의 勸告事項 및 移行

앞에서 밝힌 결정에 따라 패널은 締約國團이 韓國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도록 제안했다. 첫째, 韓國은 1984년 및 1985년에 취한 쇠고기 輸入制限措置와 그후 1988년에 수정한 措置를 철폐하거나 혹은 一般協定상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하며, 둘째, 韓國은 國際收支를 防禦한다는 이유로 1967년부터 정당화 해온 쇠고기 輸入制限措置를 철폐하기 위한 時限計劃을 작성하기 위해 美國 및 其他 關聯締約國과 協議를 하여 理事會에 의한 패널보고서 채택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韓國은 이와 같은 패널보고서의 勸告事項을 이행하기 위해 美國, 濠洲, 뉴질랜드

23) GATT 第11條 第1項에서는 ‘..... 割當制나 輸入許可 또는 其他措置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關稅, 租稅,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輸入의 禁止 또는 制限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同條 第2項에서는 그에 대한 몇가지 예외적 경우를 규정함.

24) GATT 第17條는 國營貿易企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드와의 雙務協商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合意를 보았다²⁵⁾.

첫째, 쇠고기 市場開放日程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27일의 國際收支委員會의 報告에 따라 1997년까지 輸入制限措置를 철폐하거나 이를 GATT 규정에 일치시키되 다만 時限의 명시는 유보하기로 한다.

둘째, 美國이 제안한 觀光호텔用 쇠고기의 直去來는 韓國의 쇠고기流通構造上 불가능하므로, 대신 同時賣買入札制度(Simultaneous Buying & Selling Tender System)를 도입하기로 한다.

셋째, 1989년부터 향후 3년간의 輸入쿼타량을 매년 4,000톤씩 증가시킨다.

넷째,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共同調查團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美國, 濠洲, 뉴질랜드는 1990년 4월, 5월, 7월에 각각 理事會에 그들의 韓國産 쇠고기 輸入에 대한 兩者間 協商에 합의하였음을 통고하였으며, 共同調查團으로는 이들 3개국과 그 외의 이해관계국인 캐나다가 팀을 구성하여 韓國의 畜産業 실태를 조사하고, 그의 産業構造가 輸入自由化 시기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검토한 후 1991년 1월까지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5) 美國과는 1990년 4월 27일, 濠洲와는 同年 4월 25일, 그리고 뉴질랜드와는 同年 6월 25일 각각 協商의 妥結을 봄.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美 反덤핑紛爭

가. 紛爭發生 經緯

韓國은 1988년말까지 폴리아세탈수지(Polyacetal Resin)를 전량 수입해 왔으나, 1988년 9월 연간 1만톤 생산규모의 韓國엔지니어링플라스틱(Korea Engineering Plastics; KEP)이 동양나일론과 미쯔비씨가스化學株式會社의 合作으로 설립되면서 國產 폴리아세탈수지의 市場占有率이 상승했다²⁶⁾. 이에 따라 韓國의 폴리아세탈수지 市場에서 輸入品の 비중이 감소하여 反덤핑 조사대상 3社로부터의 輸入品の 비중은 60%에서 1989년에는 약 3분의 1로, 그리고 1990년에는 약 5분의 1로 감소했으며, 同期間동안 폴리아세탈수지의 國產品 및 輸入品 價格이 하락했다. 이에 KEP는 美國의 듀퐁(Du Pont) 및 Hoechst Celanese와 日本의 아사히化學(Asahi Chemical) 등 3개사가 폴리아세탈수지를 정상가격 이하로 韓國에 수출함으로써 國內産業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反덤핑提訴를 했다²⁷⁾. 韓國政府는 동년 8월 25일에 정식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1991년 2월 20일에 關稅廳이 上記 3개사에 대해 20.6~107.6%의 덤핑마진을 결정한데 이어, 1991년 4월 24일에는 貿易委員會가 同 3社로부터의 輸入品이 國內産業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美國政府는 1991년 6월 21일 反덤핑協定 第15條 第2項에 근거, 韓國과의 協議를 요청함으로써, 同年 7월 14일, 9월 30일, 그리고 10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兩者間 協議가 개최되었으나, 合意導出에 실패했다. 이에 美國政府는 1992년 1월 21일에 反덤핑協定 第15條 第5項에 근거하여 패널설치를 요구하고 同年 2월 17일에는 反덤핑委員會에

26) KEP의 國內市場占有率은 1988년 1% 미만에서 1989년에는 47.7%로, 그리고 1990년 1/4분기에는 60.8%로 증가하였음.

27) KEP는 1990년 6월 年間 1만톤 生産規模의 工場을 추가적으로 설립함으로써 年間 總生産規模가 2만톤으로 증대됨.

서 패널설치가 결정되었다.

나. 主要爭點事項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韓國의 反덤핑關稅 賦課件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국들의 주된 관심이 덤핑마진율이나 덤핑율의 산정방식보다는 덤핑으로 인한 國內産業의 실질적 피해여부에 집중되었다. 특히 反덤핑協定상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韓國의 反덤핑關稅 부과결정이 同協定 第3條 第1~4項 및 6項, 그리고 第8條 第5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초점이 되었는데, 즉 피해판정의 기준 및 근거가 주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美國側의 주장에 의하면, 貿易委員會의 판정이 긍정적인 증거 또는 해당수입품의 수입량과 가격효과 및 피해부정판정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기타 관련 요소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第3條 第1~4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同委員會의 피해긍정판정은 국내생산자가 新規 市場進入者일 경우 이들이 輸入品의 가격보다 싼 값으로 판매하여 단기간내에 國內市場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소위 '輸入代替(import substitution)'의 가정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貿易委員會가 피해긍정판정의 근거가 되는 國內産業의 實質的 被害, 實質的 被害의 威脅 혹은 産業確立의 實質的 遲延 등의 여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피해긍정판정이 적정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는 反덤핑協定 第3條 第1~4項 및 6項, 그리고 第8條 第5項의 요건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美國은 이 외에도 韓國의 貿易委員會가 피해부정판정에 유리한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긍정판정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특정 요인들만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덤핑 輸入品 이외의 기타 요소들의 피해효과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 協定 第3條 第1項 및 4項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美國側의 주장에 대해, 韓國은 貿易委員會가 덤핑과 실질적 피해간

의 因果關係, 價格效果, 실질적 피해 및 피해위협,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 피해판정에 필요한 요인들의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했으므로, 貿易委員會의 판정이 反덤핑協定 第3條 第1~4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美國側이 주장한 '輸入代替' 가정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가 특정한 가정이나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 설립된 國內産業이 國內市場에서 輸入品을 대체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신규업자가 이전에는 전적으로 수입품에만 의존하던 國內市場에서 생산에 참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서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貿易委員會가 피해의 3가지 기준, 즉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위협,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同委員會의 판정이 反덤핑協定 第3條 第1~4項 및 6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특정 요인들에 관한 貿易委員會의 분석이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協定 第3條 第1項에 위배된다는 美國側의 주장에 대해서도 협정이 조사기관에게 조사방법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패널의 작업은 상이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貿易委員會의 판정근거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증거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고 美國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폴리아세탈수지件을 다룬 패널에는 韓國과 美國 등 紛爭當事國 외에도 캐나다, EC, 日本 등 제3국이 패널에 참여하여 同紛爭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는 바, 대체로 貿易委員會의 판정이 실질적 및 잠재적 생산량, 시장점유율, 利潤, 生産性 등 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關聯 經濟指標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同委員會가 제시한 資料는 수입량, 가격효과, 국내산업의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同委員會의 피해판정이 反덤핑協定에 위배된다는 美國側의 주장을 지지했다.

다. 패널의 判定 및 勸告

韓國貿易委員會의 피해판정을 검토한 결과,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1) 美國産 폴리아세탈수지의 輸入과 관련한 貿易委員會의 피해판정은 실질적 피해 및 피해위협과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등 피해판정의 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준하의 분석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反덤핑協定 第3條 및 8條 第5項에 위배된다.
- (2) 당시 韓國의 國內産業에 실질적 피해가 존재했다는 貿易委員會의 결정은 同決定이 國內價格下落과 販賣收入의 상당한 손실(substantial loss of sales revenue)간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貿易委員會가 1989년 當該産業의 純利潤(net profit)이 적정 수준 이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관련정보를 평가한 근거 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協定 第3條 第1項下의 긍정적 증거 제시의 요건에 위배된다. 그와 같은 貿易委員會의 판정은 同委員會가 當該物品의 輸入이 재고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協定 第3條 第4項에도 위배된다.
- (3) 貿易委員會의 피해긍정판정에는 當該物品의 輸入에 의해 國內産業에 실질적 피해위협이 존재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同委員會가 資材價格 및 利潤 등의 하락과 같이 국내산업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을 고려했으므로 協定 第3條 第3項에 위배되며, 當該 輸入品の 수입량 및 가격효과의 전망 분석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協定 第3條 第1項 및 6項에 위배된다.
- (4) 또한, 貿易委員會의 피해긍정판정에는 國內産業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

연되었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利潤 및 在庫量을 고려한 기간과 當該物品의 수입량과 가격효과 등을 고려한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協定 第3條 第4項에 위배된다.

패널은 反덤핑委員會(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가 韓國에 대해 관련 反덤핑法規를 협정하의 의무에 일치시키라는 요청을 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美國의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대한 건의와 當該事案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韓國政府가 취한 特定措置에 대해서만 건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패널은 反덤핑委員會에 韓國이 취한 조치, 즉 美國產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反덤핑關稅의 부과를 협정하의 의무에 일치시키도록 건의했다.



Ⅵ.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世界交易環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른 국가간의 이해관계도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간의 理解相衝으로 인한 貿易摩擦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 GATT는 自由貿易과 公正貿易이라는 대원칙하에 각종 國際規範을 제정하고 국가간의 貿易紛爭을 원만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締約國의 貿易擴大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되어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貿易에의 의존도가 높은 經濟構造를 지닌 우리나라가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데에는 GATT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와 각종 非關稅措置의 남용은 GATT의 존립자체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바, GATT의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국가간의 貿易紛爭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1980년대 이후 GATT體制內에서 발생한 紛爭件數만도 GATT창설이래 발생한 總 紛爭件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 90%에 이르는 분쟁이 非關稅措置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그와 같은 추세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多者間協商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GATT의 기능이 회복되고 世界交易環境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면도 있으나, 더욱 복잡해져가는 世界交易構造를 감안할 때, 國際貿易紛爭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地域主義와 自國利己主義가 강화되는 對外與件속에서 각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 심화될 각종 貿易紛爭으로부터 우리의 國益을 수호하고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급한 政策課題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반 貿易關聯 規範 및 制度를 國際規範에 일치시키고 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함으로써 貿易紛爭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제도의 운용은 일시적으로는 國內産業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이는 國際貿易紛爭을 야기시키고 對外公信力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調整의 지연 등으로 결국 國內經濟全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非關稅措置 關聯 貿易紛爭은 각국이 GATT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關稅 이외의 각종 措置를 남용하거나 GATT의 規範을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GATT體制內에 각국의 貿易政策 및 制度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貿易政策檢討制度(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의 도입으로 그와 같은 貿易慣行에는 커다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TPRM 실시를 위해 1992년 7월에 소집된 GATT 特別理事會에서는 EC國家들을 하나로 볼 때, 우리나라가 GATT회원국들 중 5大 貿易國임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그와 같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論評과 함께, 우리나라의 貿易政策 및 制度에 관해 몇가지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²⁸⁾. 즉, 우리나라는 이제 世界貿易大國이라고 칭해질 만큼 국제적 지위가 상승했으며, 그에 따른 國際社會에서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우리의 貿易政策 및 制度 하나하나가 세계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보호주의적 貿易政策 및 制度의 운용은 즉시 貿易相對國과의 通商摩擦을 야기시키고, 패널에 提訴된 경우에도 우리의 論理主張을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도 이제 貿易相對國의 GATT規範 위배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

28) 同理事會에서 지적된 세부적인 문제점은 ①농업분야의 過保護, ②복잡한 關稅體系, 衛生 및 檢疫 기준의 불투명성과 자의적인 운영 등의 非公式 貿易障壁, ③輸入先多邊化 政策과 國產化 政策을 통한 輸入制限 및 特定國家에 대한 차별대우 등 세가지로 요약됨.

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GATT紛爭解決節次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GATT 창설 이래 거의 200건에 이르는 國際貿易紛爭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4건의 被訴事例만 있을 뿐 우리 스스로가 외국의 不公正貿易行爲를 문제삼아 提訴한 적이 한 건도 없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GATT紛爭解決節次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간의 貿易紛爭을 해결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패널이 설치된 紛爭의 약 90%에 이르는 사안에 있어서 패널의 決定 및 勸告가 理事會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짐작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GATT의 분쟁해결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패널의 勸告 및 決定事項에 대한 敗訴國의 의무이행이 보장 된다면, 각종 貿易紛爭이 GATT를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다수의 貿易懸案을 강대국과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不利益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는 바, GATT紛爭解決節次의 활용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최근 들어 東京라운드 MTN協定下의 特別紛爭解決節次를 이용한 분쟁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9개 MTN協定중 技術障壁協定, 補助金·相計關稅協定, 關稅評價協定 및 反덤핑協定 등 4개 協定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政府調達協定과 輸入許可節次協定에는 옵저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政府調達協定에는 거의 가입단계에 있고,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및 개방화 속도를 고려할 때 輸入許可節次協定에의 가입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각종 協定에의 가입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提訴 가능성도 높여 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겠으나, 우리의 貿易自由化가 성숙한 단계에서는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表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야별 協定에 있어서 正會員國 뿐만 아니라 옵저버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들 국가와의 분쟁건수도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각 協定上의 規定 및 紛爭解決節次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對外貿易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表 VI-1> 東京라운드 MTN協定 加入現況 (1991. 12. 31. 現在)
(單位 : 國家數)

區分	技術障壁	政府調達	補助金· 相計關稅	牛 肉	酪 農	關稅評價	輸入許可 節 次	民 間 航空機	反덤핑
正會員國	37	14	24	24	16	29	27	21	25
準會員國	2	-	3	-	-	1	1	1	1
옵저버	28	34	27	16	22	23	29	18	27

註 : 1. EC는 1개국으로 간주함.

2. '準會員國'은 가입서명은 했으나, 該當委員會에서의 정식 가입승인이 보류된 국가임.

資料 : GATT, GATT Activities 1991, 1992

셋째, 서비스, 環境, 知的財産權 등 앞으로 貿易紛爭의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紛爭發生時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先進國들이 절대적 比較優位를 점하고 있는 이들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들과의 분쟁발생시 항상 소극적이고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서비스市場이 빠른 속도로 開放되어 가고 있으나, 市場開放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장기간동안 政府의 保護 아래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아직도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 結果의 이행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多國籍企業의 덤핑이나 독과점 행위 등 不公正 혹은 非競爭的 貿易行爲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 관련 貿易紛爭 발생시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서비스의 각 분야별 통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統計에 근거한 논리적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각 분야별 특성

과약은 물론이고 關聯 統計資料의 수집 및 加工能力의 배양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또한, 최근 들어 先進國들이 環境問題를 들어 각종 貿易制限措置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그와 같은 措置 및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環境政策보다는 環境適合型 産業의 육성을 통하여 産業體質을 개선해 나가는 政策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우리기업들이 技術 高度化 및 先進化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知的財産權과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그와 같은 기술분쟁에 대한 企業·政府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司法府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行政府 및 司法府內에 國內企業間의 知的財産權 紛爭解決機能을 갖추으로써 국제적인 紛爭解決能力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貿易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과의 通商外交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貿易政策 및 巨視政策의 計劃樹立이나 執行에 있어서 국가간에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國家間 協調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간의 情報交換에 따라 상대국의 정책목표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되어 있는 政策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피하게 해 줌으로써, 국가간의 불필요한 競爭 및 紛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OECD 가입을 앞두고 있어 巨視政策 및 貿易政策의 국제간 조정문제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제고하고, 국제간 協商經驗을 축적하는 등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가간의 紛爭을 미리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國際貿易法이나 國際貿易政策 뿐만 아니라 패널업무에 능통한 通商專門家의 양성 및 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GATT規定 뿐만 아니라 外國의 通商法 및 貿易制度를 심층분석하여 外國의 輸入制限措置 혹은 企業經營方式이 GATT規範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역상대국가와의 兩者間 貿易懸案을 해결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紛爭發生時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의해 총 59개 품목이 輸入規制를 받고 있고 7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바, 이들의 대부분은 反덤핑 關聯 事案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反덤핑規定에 관하여는 GATT規定이 워낙이 모호하여, 각국, 특히 美·EC·캐나다·濠洲 등의 先進國들이 國內法에 提訴에서 措置履行에 이르기까지 保護主義的 성향이 강한 절차규정과 함께 자의적인 기준을 많이 적용함으로써 同制度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외에도 日本의 경우에는 GATT規定上에 근거가 없는 兩者間 協議를 통하여 혹은 일방적으로 數量制限을 가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부당한 輸入規制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규제중 품목의 輸出比重이 매년 현저하게 감소되고 전반적인 輸出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⁹⁾. 특히, 주요 先進國에 의해 輸入規制를 받고 있는 품목들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家電製品, 鐵鋼, 纖維, 신발類, 앨범 등으로 그들 국가내에서는 斜陽産業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들의 對韓 輸入規制가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國內産業의 保護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不利益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 조치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GATT規範 및 外國의 通商法이나 각종 制度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업무수행은 國際貿易法이나 國際貿易政策 뿐만 아니라 패널업무에 능통한 通商專門家의 양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은 단지 패널업무 뿐만 아니라 國內規範 및 制度의 개선을 주도하고 貿易相對國의 不公正貿易事例를 수집·분석하는 업무까지 겸하여 우리의 GATT 紛爭解決節次의 활용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우리나라의 경우 規制中 품목의 輸出比重이 1989년에 12.5%였으나, 1990년에는 12.4%, 1991년에는 11.1%, 1992년에는 8.7%, 그리고 1993년(1~7월)에는 6.9%로 하락함.

〈參考文獻〉

- 經濟企劃院, 「UR 협상 최종협정문(안)」, 1991. 12.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우루과이라운드 : 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1990
—————, 「UR 총점검」, 정책연구 92-36, 1992. 10.
- 經濟企劃院 對外經濟調整室, APEC 관련 종합자료집, 1993. 6.
- 大韓貿易振興公社, 「GATT 분쟁해결사례 조사를 통해 본 무역마찰현황」, 貿公資
料 26-61, 1987. 6.
—————, 「GATT : GATT 통상마찰 사례집」, 貿公資料 88-107, 1988.
12.
—————, 「전후 통상마찰 사례집」, 貿公資料 88-107, 1988. 12.
—————, GATT 협정문, 貿公資料 89-38, 1989. 5.
—————, 「분쟁해결과 GATT」, 貿公資料 93-34, 1993. 6.
- 産業研究院, 「분쟁해결절차」, 1987
- 徐憲濟, 趙大衍, 「GATT의 무역분쟁해결절차」, 1991. 10.
- 孫讚鉉,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책연구
90-04, 1990.
- 韓國貿易協會, 「GATT 해설」, 1988. 7.
- Brand, R. A., "Private Parties and GATT Dispute Resolution : Implications of the
Panel Report on Section 337 of the U.S. Tariff Act of 1930", Journal of
World Trade, 1990
- Bronckers, M. C. M., "Non-Judicial and Judicial Remedies in Internatonal Trade
Disputes : Some Reflections at the Close of the Uruguay Round",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90
- Forgues, E. C. & Ostrihansky, R., "New Developments in the GAT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Journal of World Trade, April, 1990

GATT, GATT Activities, 1991, 1992

GATT, MTN. GNG/NG13/W/4/Rev.1

Horlick, G. N. & Debusk, F. A., "Dispute Resolution under NAFTA : Building on the U.S.-Canada FTA, GATT and ICSID", Journal of World Trade, Feb., 1993

Jackson, J. H., "Rule Implementation and Dispute Resolution", The World Trading System ;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IT Press, London, England, 1989

Lutz, J. M. "GATT Reform or Regime Maintenance : Differing Solutions to World Trade Problems", Journal of World Trade, April, 1991

Mckinney, J. A.,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Dec., 1991

Pescatore, P. and et al, Handbook of Dispute Settlement,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Inc., 1991

Pescatore, P., "The GAT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 Its Present Situation and its Prospects", Journal of World Trade, Feb., 1993

Petersmann, E. U.,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revention and Settlement of Invironmental Disputes in GATT", Journal of World Trade. Feb.. 1993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祭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的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の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の 輸入品流 통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집검 ('92.10)	共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份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2)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政策資料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1993年 11月 22日 印刷

1993年 11月 25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발당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의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를 禁 止 함